



미국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상 권리양도에 관한 법적 고찰

A Legal Study on the Transfer of Interests and Rights under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 Act

저자 (Authors)	심종석, 이원근 Chong-Seok Shim, Won-Gun Lee
출처 (Source)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7(1) , 2007.3, 65-86 (22 pages) The Journal of Internet Electronic Commerce Research 7(1) , 2007.3, 65-86 (22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Korea Internet Electronic Commerce Association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0881049
APA Style	심종석, 이원근 (2007). 미국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상 권리양도에 관한 법적 고찰.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7(1), 65-86.
이용정보 (Accessed)	대구대학교 203.207.31.89 2015/11/26 12:59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원저작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게재 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The copyright of all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original author(s). Nurimedia is not responsible for contents of each work. Nor does it guarantee the contents.
You might take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according to copyright and other relevant laws if you publish the contents without consultation with the original author(s).

미국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상 권리양도에 관한 법적 고찰

A Legal Study on the Transfer of Interests and Rights under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 Act

심종석* · 이원근**

Chong-Seok Shim · Won-Gun Lee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금융라이선스와 금융제공에 |
| II. 컴퓨터정보거래법의 구성체계 | 대한 제한요건 |
| 와 주요 골자 | V. 요약 및 결론 |
| III. 컴퓨터정보의 권리양도에 대한 | 참고문헌 |
| 법적 기준과 효과 | |

... Abstract ...

UCITA applies to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 In this UCITA computer information means information in electronic form which is obtained from or through the use of a computer or which is in a form capable of being processed by a computer. The term includes a copy of the information and any documentation or packaging associated with the copy and informational rights include all rights in information created under laws governing patents, copyrights, mask works, trade secrets, trademarks, publicity rights, or any other law that gives a person, independently of contract, a right to control or preclude another person's use of or access to the information on the basis of the rights holder's interest in the information. In the other hand license means a contract that authorizes access to, or use, distribution, performance, modification, or reproduction of, information or informational rights, but expressly limits the access or uses authorized or expressly grants fewer than all rights in the information, whether or not the transferee has title to a licensed copy. Transfer with respect to a contractual interest, includes an assignment of the contract, but does not include an agreement merely to perform a contractual obligation or to exercise contractual rights through a delegate or sublicensee and with respect to computer information, includes a sale, license, or lease of a copy of the computer information and a license or assignment of informational rights in computer information. Regarding to the transfer of interests and rights, UCITA

* ① 남서울대학교 국제경영학부 전임강사, 주서자(011-284-3439 / cs-shim@nsu.ac.kr)

② 한국의국어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수료(상차법전공)

**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교수, 교신서자(053-850-6227 / wglee@daegu.ac.kr)

mentioned expressly section 501~511 in part 5,

Key Words : UCITA, Informational Right, Copy, License, Transfer of Interests and Rights,

1. 서론

미국의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 Act : 이하 'UCITA')은 계약당사자 간 계약의 목적물을 '컴퓨터 정보'(computer information)로 특정한 경우 적용되는, 곧 컴퓨터 정보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된 미국 내 실행법으로서이 지위를 겸한다(國生一畝, 2001).¹⁾ 이 경우 '컴퓨터 정보'라 함은 '컴퓨터로부터 또는 컴퓨터의 이용으로 얻거나 또는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어질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라 정의된다.²⁾

'컴퓨터 정보거래'³⁾와 관련 그간 강학상 및 학제 간 연구에 모듬지기 UCITA가 물가분의 분석도구가 되어 온 까닭은, 무엇보다도 동 법이 컴퓨터 정보를 대상(subject matter with the contract)으로 정해진 최초의 계약법으로서 그 선도적 지위를 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UCITA가 특별히 유형물품(visible goods)의 매매를 중심으로 계약법리를 구성하고 있는 실정의 국제통일계약법규범을 적용함에 있어 예견가능한 법적 문제 및/또는 장애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법적 실익과, 동 법을 컴퓨터 정보거래에 관한 적용법으로 특정한 경우 법적 안정성 및 합목적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상무적 실

1)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NCCUSL),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 Act : Last Revisions or Amendments Completed Year 2002, 'prefatory note' : 법령 [UCITA :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 Act]에 있어서 'transaction'은 일반적으로 '거래'라고 번역되나 법률용어로서는 달리 '법률행위'로 번역된다. 법률행위(transaction)는 일정한 일을 하거나 또는 성취하는 등 그 내용은 여러 가지이지만 대개 타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 그 행위의 결과 소로써 이를 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transaction'에 포함된다. 따라서 'transaction'은 계약보다 의미가 넓다고 하겠다(Gris, 1996, p.519) : 연관규정으로서 UCITA, Section 102, (7), (11), (26), (30), (45) 등.

2) UCITA, Sec. 102, (10) : UCITA는 '컴퓨터 정보'(computer information)와 정보(information)를 구별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정보는 '자료, 텍스트, 이미지, 소리, 배치설계(masking) 또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도록 컴퓨터에 직·간접적으로 일련의 말이나 지시가 사용되는, 곧 컴퓨터 프로그램 및 그것의 수정 및 검계를 총칭하는 것'으로 정의된다(UCITA, Sec. 102, (35)).

3) '컴퓨터 정보거래'(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는 '컴퓨터 정보 또는 컴퓨터 정보에 대한 정보권리를 생성(create), 수정(modify), 양도(transfer) 또는 허여(license)하는 약정 또는 이행'을 말한다(UCITA, Sec. 102, (11)). 이 경우 약정(agreement)은 당사자가 그들 언어로 또는 다른 경우의 이행과정(course of performance), 협상과정(course of dealing) 및 UCI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거래 관행'(usage of trade)을 포함한 의미로 사실상 합의 된 계약당사자의 매매계약을 말하며 [UCITA, Sec. 102, (4)], 달리 '동 법 및 다른 적용 가능한 법에 의거하여 당사자의 약정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법적 의무'라고 정의하고 있는 계약(contract)과 구별되고 있음은[UCITA, Sec. 102, (17)] 실무적용상 각의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다.

익을 내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Gregory, 2001).

살피기에 UCITA는 컴퓨터 정보를 대상으로 한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나름의 독특한 법리를 새롭게 구성하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이를테면 컴퓨터 정보거래를 일련의 라이선스(license)⁴⁾ 계약으로 파악하고, 계약당사자 간 전자적 형태의 무형물품(invisible goods), 곧 컴퓨터 정보를 계약의 내용으로 특정한 경우 당해 계약에 적용 및/또는 원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로부터 입법적 의의를 구할 수 있다.

본고는 이 같은 UCITA의 입법성과를 중시·수용하여 컴퓨터 정보에 대한 소위 라이선스 계약 하에서 컴퓨터 정보 및 정보권의 권리양도에 관한 법적 기준과 이에 상당한 효과를 UCITA 제5편(transfer of interests and rights)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하는 바, 그 내용은 컴퓨터 정보(권)이 가지는 특성을 각의 분기할 수 있는 이점을 명료히 설정하기 위한 취지에서, 우선 UCITA의 구성체계와 편별 주요 골자들에 요약하고 이에 전체적인 틀을 결부하여, 이하 개별사안으로서 연구범위로 특정한 권리양도에 관한 법리 및 당해 규정내용을 중심으로 그 법적 기준과 효과를 구하고자 함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요컨대 본 연구는 컴퓨터 정보(권)의 양도(transfer)s에 기한 법적 기준과 그 효과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바, 이에 컴퓨터 정보를 거래의 대상으로 특정하여 대가관계에 입한 계약당사자로 하여금 정보권의 귀속요건에 관한 UCITA의 규정내용과 이에 대한 법적 기준 및 그 효과를 명확히 분별하여 이를 실무상 격의 적용 및/또는 원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그 상무적 시사점 제시에 연구목적들을 두었다.

4) '라이선스'는 피허용전자(licensee)가 저작물(copy)에 대한 권리보유 의무를 물문하고 정보(information) 또는 정보권(informational right)에 접근(access)·사용(use)·분배(distribution)·이행(performance)·수정(modification) 또는 재현(reproduction)을 허락하지만, 허락된 접근 또는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당해 정보에 대한 모든 권리를 다 적게 허락하는 계약을 말한다[UCITA, Sec. 102, (41)]. 이 경우 피허용전자(licensee)는 컴퓨터 정보에 대한 접근 또는 이용에 대한 권리를 허락 또는 행사하기 위하여 작성된 의사학적 자산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UCITA, Sec. (42)]. 반면에 허용전자(licensor)는 컴퓨터 정보나 정보권의 접근 또는 사용에 있어서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기 위하여 약정에서 의무가 부여된 자를 의미하는데, 이들대인 정보 또는 정보권의 교환에 있어서 각 당사자는 당해 정보, 정보권리 또는 그것이 제공하는 접근에 대하여 허락자가 된다[UCITA, Sec. 102, (43)]. 저작물(copy)이라고 함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정보가 고정되어 있는 매체(media)이고 동 매체로부터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나 장치의 도움으로 인지(perceived)·재현(reproduced)·사용(used) 또는 전달(communicated)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UCITA, Sec. 102, (20)].

5) '양도'는 계약상 권리와 관련하여 계약의 양도를 포함하나, 대리 대리자(delegate)나 제3허용자(amblicensee)를 통하여 단순히 계약상 의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계약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약정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컴퓨터 정보와 관련하여 컴퓨터 정보의 저작물의 권리, 라이선스 또는 임대와 컴퓨터 정보에 있어서 정보권의 라이선스나 양도는 이에 포함된다[UCITA, Sec. 102, (65)].

I. 컴퓨터정보거래법의 구성체계와 주요 골자⁶⁾

1. 일반규정(general provisions)

제1편은 일반규정으로 UCITA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정보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컴퓨터 정보를 대상으로 당사자가 특정사항을 다루지 않고 있는 경우 그 법적 기준과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동 법의 적용범위는 '컴퓨터 정보거래'에 대해서 적용되며, 달리 컴퓨터 정보 이외의 대상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곧 거래가 컴퓨터 정보와 함께 물품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면 컴퓨터 정보 관련 거래의 일부로서 내재된 권리 및 그것의 생성 또는 수정에 대하여 적용된다.

그러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copy)이 물품의 일부에 포함되어 판매되거나 또는 임대되는 경우 당해 물품이 컴퓨터이거나 컴퓨터 주변장치인 경우, 구매자가 임차인에게 당해 프로그램의 접속 또는 사용을 허락하는 것이 판매되거나 임대되는 물품의 거래목적상 통상적으로 중요한 경우에 한하여 동 저작물 및 컴퓨터 프로그램에 적용된다.

여타의 경우로 컴퓨터 정보, 정보권 또는 이에 대한 접속이 주요한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 전부에 대하여, 컴퓨터 정보 외에 여하의 것을 동시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컴퓨터 정보와 관련된 거래의 일부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⁷⁾

2. 계약의 성립과 그 조건(formation and terms)

제2편은 계약의 성립과 그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곧 일반적 계약체결과 관련, 당해 계약조건은 여하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구성하기 위한 충분한 약정(agreement)이 모색될 수 있다고 하고, 이에 계약체결 시 청약은 전자문서(data messages)⁸⁾를 포함

6) UCITA 제정경위와 입법연혁 등에 대해서는 다수의 선행 연구논문에서 기 다루어진 바 있기에 여기서는 일부 선행논문으로 이를 대신하고, 이하 UCITA 편별 규정체계와 그 주요 골자만을 요약·정리하고자 한다. 권재열, "미국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UCITA)의 적용범위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오병철, "UCITA상의 전자정보거래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 『무역상무연구』, 제2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6., 이중열, "UCITA의 주요 논점과 대미 컴퓨터정보거래에서의 대응", 『국제상학』, 제18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2003., 한병완, "미국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UCITA)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제14권 2호,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2., 허해관, "국제전자정보거래에 관한 입법동향", 『무역상무연구』, 제2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4., 등.

7) 참고로 물품의 일부로 처리된 S/W는 물품으로 간주되고, 동영상, 녹음물 및 인쇄될 수 있는 매체 등은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이들에 대해서는 현행 보증법과 이들 사업영역에서 고유하게 적용되는 현행 실경법이 그대로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 UCITA, Sec. 103, (d) ; NCCUSL, 『UCITA with Preamble and Comments』, 2002, 'official comment 5, to Sec. 103.'

8) '전자문서'(electronic message)라 함은 타인에게 또는 전자적 대리인에게 통신의 목적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하여 '합리적인 매개체'(reasonable medium)에 의해서라면 승낙을 유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승낙이 청약과 중대하게(materially) 충돌하는 경우 이는 반대청약(counter offer)으로서 기능함과 동시에 이를 제외하고 격정한 승낙의 표현은 설명 그 승낙이 청약의 조건과 다른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승낙으로 작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조건부 청약 또는 승낙에 대하여 UCITA는 원칙적으로 타방이 조건에 동의할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의 성립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전자적 대리인'(electronic agent)⁹⁾에 의한 청약과 승낙을 보장하고 정보권의 양도는 약인 없이 유효한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기록(record)¹⁰⁾의 승인요건과 관련, 계약당사자 간 동의를 전제로 양당사자는 계약의 조건으로서 표준서식(standard forms)¹¹⁾을 포함한 기록물의 조건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계약이 양당사자의 행위에 의하여 성립되는 경우의 계약조건은 양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조건은 모든 관련 사정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다고 하고, 다만 양당사자가 계약의 기록물을 입증하거나 또는 양당사자가 동의를 표시함으로써 타방의 조건이 수록된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일결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하 전

의하여 저장 생성 또는 전송되는 기록물이나 전서물을 의미한다. 이 경우 기록물(record)이라고 함은 유형의 매개체에 각인되거나 전자 또는 다른 매체에 저장되어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검색될 수 있는 정보라 총칭한다(UCITA, Sec. 102, (28), (55)). 국내 실경법의 경우 '전자거래기본법'에서는 전자문서를 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또한 '전자서명법'에서의 정의도 동일하다(제2조 제1항). 한편 국제상사법위원회(UNCITRAL)의 전자상거래 모델 법(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에서는 국내 실경법에서의 전자문서에 상응하는 용어인 '데이터 메시지'(data message)로써, 즉 특별한 제한 없이 전자자료교환(EDI), 전자우편(e-mail), 팩스 또는 적시밀리 등을 포함한 전자적·광학적 기타 유사수단으로 작성·발신·수령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제2조 제1항). 본 고는 제1반 국제상사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 '데이터 메시지'(data messages)가 국내 실경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 전자문서의 의미와 서로 상응하고 당해 규정 취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종이문서와 상호 대비에 따른 실익을 고려, 이하 전자문서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이에 제1반 국제기구 및 각국 실경법에 의해 정의되어진 전자문서에 대한 용어 정의는 다음의 법규범을 참고할 수 있다. OECD Guidelines for Cryptography Policy(1997)' Chap. III, : 'IOC Supplement to UCP 500 for Electronic Presentation (eUCP)' Art. a3, : 'CMI Rules for Electronic Bills of Lading(1990)' Art. 11, :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ETA)' Sec. 2, (7), (13), : 'Electronic Signatures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E-Sign)' Sec. 106, (4), : 일본 '電子署名及び記録媒体に関する法律', 제2條, : 말레이시아 Digital Signature Bill(1997)' Art. 2, 등.

9) '전자적 대리인'은 전자문서 또는 이행에 대하여 조치 또는 회신하는 시점에서 개인의 검토 또는 조치없이 그를 대신하여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전자문서나 이행에 답변하기 위하여 개인이 사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전자 또는 기타 자동화된 수단을 의미한다(UCITA, Sec. 102, (27)).

10) UCITA상 '기록'은 유형의 매개체에 각인되거나 전자 또는 다른 매체에 저장되어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검색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UCITA, Sec. 102, (55)).

11) '표준서식'은 거래에 있어서 계속적인 사용을 위하여 작성되고, 가격, 수량, 지불방법, 표준선택사항 중의 전별이나 인도시기나 인도방법을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개인에 의하여 첨삭된 용어의 변경없이 거래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수록된 기록물을 총칭한다(UCITA, Sec. 102, (61)).

자격 오류에 대한 소비자 보호, 그리고 전자문서의 효력발생시기 등에 관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오현석, 2006).

3. 계약의 해석을 위한 구성(construction)

제3편은 계약의 해석을 위한 구성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주요 골자는 구두 또는 대외적인 증거, 실질적 구성으로서 명시적 조건, 이행과정, 상거래 과정 또는 상관습의 우선적용 순위 및 그 요건의 일치율 전제로 당해 구성이 불합리한 경우의 해결지침을 명료히 제공하고 있다.¹²⁾

나아가 변경 및 계약해제의 사유와 당해 계약의 해석에 대한 연관규정에의 제한을 결부하고 있으며,¹³⁾ 또한 계속적인 계약조건과 그 조건의 구체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하 미결조건의 이행에 있어서는 통상의 영미법에 기한 법적 시각에서 상관습에 기한 신의칙(principle of good faith)¹⁴⁾을 중시하여 합리적인 방법과 시간 내의 이행을 강조하고 있음과 동시에 허여에 대한 해석 및 요건에 대하여 뚜렷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심종석, 2004).¹⁵⁾

12) UCTA, Sec. 301~302.

13) UCTA, Sec. 303. : 이하 연관규정으로서 UCTA, Sec. 201, 307, 702.

14) 신의칙에 관하여 참고로 영미법계에서는 신의칙의 해석기준을 당사자 간 계약관계에 있어 책임귀속에 따른 '경제적 중요성(economic consequences)'에 주안점을 두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신의칙의 법적 규제에 있어 '도덕적 의무의 최소범위(a minimum range of moral duties)'를 규율하고 있는 데, 이는 공평(equity)과 정의(justice)의 차원에서 형평법의 법적 보증기능을 통하여 보증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치계상의 특성을 신의칙에 관하여도 적용하여 합리적 신의칙 기준을 형성하기 위한 법적 의도에 기인한다. 한편 미국에서는 신의칙의 기준을 공정거래(fair dealing)를 위한 '사실상의 경직(honesty in fact)'이라는 포괄적인 개념하여 포섭하여 두고, 이를 계약의 이행과 연계하여 적용하고 있다. 규정례로써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 이하 'UCC')에서는 신의칙을 '실제로 관련된 행위 또는 거래에서의 경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UCC, §-201, (19)]. 그러나 때때로 있어 상인(merchant)에게 적용되는 신의칙은 "사실상의 경직과 나아가 공정한 거래라는 합리적인 상기준의 준수를 의미한다[UCC, §-103, (1), (b)]."고 규정하여 보다 구체적·직접적인 적용기준을 두고 있다. 따라서 '상인 간 계약'과 '상인과 소비자 간 계약'은 서로 다른 법원칙이 적용되고[UCC, §-104, (3) ; UCC, §-207, (2)], 그 기준은 상인의 정의에 의하여 보증된다[UCC, §-104, (1)]. 또한 UCC상의 신의칙에 연관되는 개별규정은 계약의 이행에 있어 신의칙의 준수를 강조하고 있는 강행규정, 즉 "당사자는 본 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본 법의 제반 규정규칙을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으나 본 법이 규정하는 신의칙, 합리성, 청결 및 주의의 제반 의무는 합의의 중에서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들 의무의 이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그 기준이 명백하게 불합리한 것이어서는 아니된다[UCC, §-102, (3)]."는 규정에 의해 제한된다. UCTA상 신의칙은 상기 UCC 법리를 그대로 계수하여 '사실상 경직함과 공정한 거래가 되는 합리적 상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UCTA, Sec. 102, (32)].

15) UCTA, Sec. 304~308.

4. 컴퓨터 정보에 대한 보증(warranties)

제4편은 컴퓨터 정보에 대한 보증체계에 관하여 이들 중 10개조로 구성하고 있는데, 전규정의 내용은 순차적으로 물간섭 및 물침해에 대한 보증 및 의무,¹⁶⁾ 보통법상 보증체계의 법리를 계수한 '명시적 보증'(express warranty)과 '묵시적 보증'(implied warranty)의 기준을 컴퓨터 정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를 명정하고 있다.¹⁷⁾

특별히 '묵시적 보증'에 관해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상충성·정보의 내용을·피하여 권자의 목적 및 시스템 통합요건을 규정하고 있음과 동시에,¹⁸⁾ 보증포기 또는 변경 그리고 보증의 축적·중독, 보증의 제3의 수익자에 관한 법적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심종석, 2006).¹⁹⁾

5. 계약상 권리의 양도(transfer of interests and rights)

제5편은 본 고의 연구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소유권과 계약상 권리의 양도에 관하여 다루고 있는데, 곧 라이선스 계약하에서 정보의 저작물(copy)에 대한 소유권이나 점유권 등 권리의 귀속을 명확히 하고, 나아가 권리의 양도가능성에 관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권리양도에 있어 담보부 라이선스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16) UCITA, Sec. 401. ; 이하 병관규정으로 UCC, §2A-211, §2-312.

17) UCITA, Sec. 402. ; UCC, §2A-210, §2-313. ; 참고로 UCC에서는 -UCITA에서와 마찬가지로- '명시적 보증'(express warranty)과 '묵시적 보증'(implied warranty)을 각기 인정하고 있는데,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명시적 보증은 물품에 관한 그리고 '계약의 기초의 일부'(part of the basis of the bargain)가 되는 때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사실 확인(affirmation)이나 약속(promise)은 그 물품이 그 확인이나 약속에 부합한다는 명시적 보증책임을 생기게 하고, '계약의 기초의 일부'로서 이루어진 물품의 형세(description)는 어느 것이든 그 물품이 당해 형세에 부합한다는 명시적 보증책임을 생기게 하며, '계약의 기초의 일부'로서 만들어진 견본(sample)이나 모형(model)은 어느 것이든 그 물품의 전부가 견본이나 모형에 부합한다는 명시적 보증책임을 생기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명시적 보증책임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때도인이 'warranty'나 'guarantee'와 같은 고전적 용어를 사용하거나, 그가 품질보증을 할 특성의 의사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명시하고, 다만 '단순한 물품가치의 확인'(an affirmation merely of the value of the goods)이나 '물품에 대한 의견이나 추천에 불과한 때도인의 진술'(a statement purporting to be merely the seller's opinion or commendation of the goods)은 명시적 보증책임에 관여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두기하고 있다(UCC, §2-313). 한편 묵시적 보증은 때도인이 동종의 물품을 취급하는 상인인 경우 매매계약은 매매의 목적물이 통상적 양성(merchantability)을 갖는다는 보증을 묵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다만 이러한 보증은 배제 또는 변경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UCC, §2-314). 이 경우 통상적양성의 최소요건은 계약에서 특정한 바 하나 없이 인도되었을 것, 대체가능물(fungible goods)의 경우 표시된 범위 내에서 '균정하게 평균적인 품질'(fair average quality)일 것, 그러한 물품이 사용되는 '통상의 목적'(ordinary purposes)에 적합할 것, 계약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개별단위내의 물품 및 당해 전체단위의 물품이 서로 종류·품질 그리고 수량의 면에서 균등할 것, 계약에서 요구하는 대로 적절하게 수용(contained), 포장(packaged) 그리고 표시되어(labeled) 있을 것, 용기 또는 형세에 사실에 대한 약속이나 확인이 표시되어 있는 때에는 그에 부합할 것으로 두고 있다(UCC, §2-314, (2) ; UCC, 'comment 6-8 to § 2-314' ; UCITA, Sec. 402-405).

18) UCITA, Sec. 403-405. ; UCC, §2A-212, §2A-213, §2-314, §2-315. ; Restatement (2nd) of Torts §552.

19) UCITA, Sec. 406-409. ; UCC, §2A-214, §2-317. ; Restatement (2nd) of Torts §552.

이상은 본 고의 연구범위로서 이하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6. 계약의 이행(performance)

제6편의 내용은 계약의 이행을 다루고 있는데, 곧 이행승낙의 법적 기준에 관한 전통적인 규칙을 컴퓨터 정보거래에 부합하게 변형·수용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그 체계는 총 18개 조항으로 순차에 따라 계약의 일반적 이행, 허여권자의 사용가능의무, 만족할 수준의 정보제공, 즉각적 이행완료, 이행에 대한 전자적 규정, 저작물에 관한 인도제공 및 인도관련 이행·지불·검사권 및 검사 전 지불, 승낙의 발생시점 및 저작물에 대한 승낙의 효과·입증책임·클레임 통지를 포함하여 접속계약 및 수정·지원계약, 출판사 대리권 및 최종사용권자 관련 계약, 저작물의 손실위험, 권제조건의 불이행 면제, 계약의 종료에 대한 제반 이행조건 등이다(안병수, 2006).

7. 계약위반(breach of contract)

제7편에서는 계약위반에 관하여 다루고 있는데, 곧 그 내용은 계약위반을 법적 항변 없이 일방이 격결한 방법으로 의무를 이행치 못하고 계약을 부인하거나 또는 계약상 사용조건을 초과하거나 또는 동 법이나 계약에 의한 의무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발생한다고 하고,²⁰⁾ 그 유형으로 이행지체·보증위반·이행거절·정보의 불인도 및 부당한 공개·계약에 반하는 정보이용·계약상 이용조건 등을 예시하고 있다.

다만 계약위반은 국제통일계약법규범(이들테면 CISG, PICC, PECL 등)하에서의 처지에서와 같이 '중대한 위반'(material breach)을 구성요건으로(Farnsworth, 1998), 그 내용은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당해 계약위반이 계약상 필수적 조건을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서의 언어를 포함한 상황, 합리적인 양 계약당사자의 기대사항, 상거래 또는 산업의 표준 및 관행 등에 비추어 당해 위반이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실질적으로 해를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것 같은 경우 또는 계약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기대되었던 중대한 이익은 손해를 입은 당사자로부터 박탈하였거나 박탈할 것 같은 경우로 특정하고 이에 중대한 계약위반의 범위에 관하여 부가적으로 '경미한 위반'(non-material breaches)의 '누적적 효과'(cumulative effect)가 중대한 계약위반을 구성할 수 있다고 추보하고 있다(한병완, 2006).²¹⁾

20) UCTA, Sec. 701, (a).

21) NCCUSL, *ex. cit.*, Part 7, Sec. 701, 'breach of contract', 'material breach', 'official comment 1~7.'

8. 구제조치와 부속규정(remedies and miscellaneous provisions)

제8편은 일반적인 구제조치와 취소의 효과, 구제조치의 계약상 수정, 약정에 의한 손해의 정산기준,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및 제한요건, 중대한 물실표시나 사기에 대한 구제조치, 일반적인 손해의 측정에 대한 법적 기준, 배상금액의 차감요건, 합의된 이행이 독특한 경우에 있어서의 구체적 이행에 대한 지침, 라이선스의 취소에 따른 권리의 귀속, 전자적 자구행위에 대한 조건과 그 효과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별히 제9편은 부속 규정으로서 기타규정에 해당한다.

II. 컴퓨터 정보의 권리양도에 대한 법적 기준과 효과

1. 서설

UCITA 제5편은 총11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정보권리의 소유권 및 저작권, 계약상 권리의 양도와 그 효과, 대리인에 의한 이행과 재허여계약, 피허여권자에 의한 양도, 금융업자가 피허여권자가 아닌 경우 금융제공, 금융라이선스, 금융제공에 대하여 취소불능의무, 구제조치 또는 이행, 허여권자의 권리에 대한 효과 등을 각기 규정하고 있다.

특히 UCITA는 컴퓨터 정보거래에서 정보권(informational rights)²²⁾에 대한 권리와 저작물(copy)에 대한 권리를 별개로 구분하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²³⁾ 이는 곧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은 소유자에게 당해 저작물에 대한 특정의 권리를 부여하지만 이로 인하여 저작권이나 지적재산권 등이 소유자에게 당연히 양도되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하기 위한 법기술상의 배려로 해석된다. 따라서 저작물은 정보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단순한 매체(medium)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은 정보권의 양도에 있어 핵심적 법리로 기능한다.

이 같은 정보권과 저작물에 대한 법기능상 권리를 전제로 UCITA에 있어 권리양도 관한 법적 기준과 그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정보권의 소유권과 저작권

22) '정보권'은 특허권, 저작권, 배치설계, 영업비밀, 상표권, 동보권과 관련한 법에 의하거나, 계약과 무관하게 정보에 있어서 권리소유자의 이익에 기초한 정보를 타인이 이용하거나 검속하는 것을 통제하거나 폐지하는 권리를 부여한 기타 법률에 의거하여 발생된 정보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의미한다(UCITA, Sec. 102, (38)).

23) UCITA, Sec. 501, (b).

컴퓨터 정보를 계약의 목적물로 특정한 당해 약정서(agreement)에서 '컴퓨터 프로그램'(computer program)²⁴⁾에 대한 정보(권)의 소유권 이전을 명정한 경우 당해 소유권은 약정상 합의된 시간 및 장소에서 이전하게 되는데, 다만 컴퓨터 프로그램이 존재하여 당초 계약서에서 확인될 때까지는 그 이전이 유보된다고 하는 제한요건이 뒤 따른다. 다만 이 경우 동 약정서에서 특정의 시한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소유권은 당해 프로그램 및 정보권이 존재하여 계약서에 구체화될 때 비로소 이전하게 된다.²⁵⁾

일반적인 계약에서는 양수인이 그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기 전에는 그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또한 동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음이 원칙인데, 이 경우 대금지급의무나 기타 약인(consideration)²⁶⁾ 제공의무 등의 이행이 '중대한 위반(material breach)'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의무가 이행되기 전까지 소유권을 포함한 제 권리는 마땅히 이전되지 않는다(Schaber and Rohwer, 1999, pp.2 ~4). 그렇지만 대금지급의무나 약인 제공의무의 이행이 권리의 이전시기 이후에 행사된 경우 법원이 대금이나 약인의 수령이 권리양도의 정지조건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음은 이와는 별론이다²⁷⁾

한편 저작권(title to a copy)은 라이선스(license)에 의하여 결정되게 되는데, 곧 저작권의 소유 또는 관리에 대한 피허여권자(licensee)의 권리는 응당 당해 라이선스에 의하여 적용받게 된다. 이 경우 달리 허여권자(licensor)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허여권자가 저작물에 대한 권리와 그로부터 파생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게 되는데, 다만 당해 라이선스가 피허여권자에게 타인의 저작물을 생성하여 판매할 권리를 허여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아울러 권리에 대한 유보행사는 허여권자에 의하여 피허여권자에게 인도된(delivered)²⁸⁾ 저작물에 대해서만 적용된다.²⁹⁾

24) '컴퓨터 프로그램'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도록 컴퓨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일련의 말이나 지시가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UCITA, Sec. 102, (12)). 이는 실무상 컴퓨터가 실행할 작업의 내용과 순서를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술한 일종의 명령문의 집합으로 설명되는데, 곧 이것이 컴파일러(compiler : 고급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래밍 언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바꾸는 과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나 인터프리터(interpreter) 등 번역기에 의해 실행 가능한 기계어 프로그램으로 번역되고 기억장치에 로드된 다음 순차로 실행되는 과정을 거쳐게 된다.

25) UCITA, Sec. 501, (a).

26) 영미법상 '약인'은 약속에 관하여 약속자(promisor)에게 발병하는 이익 또는 수약자(promisee)가 부담하는 손실(detriment)을 의미한다. 약인은 약속과 동등한 가치를 지닐 필요성은 없으나 법률상으로 보아 가치가 있는 것, 즉 실제적인 것이어야 하고, 계약정립 시를 기준으로 현재의 각위 또는 부각위든 장래의 각위 또는 부각위든 무관하나 과거의 것은 약인이 될 수 없다. 아울러 약인은 적법하여야 한다. 따라서 불법적 약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약속은 무효이다. 약인은 수약자에 의해 제공되어야 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현재는 일반적으로 약속에 대한 대가라고 증명된다.

27) UCITA, Sec. 501,, 'official comment 2.'

28) 저작물과 관련한 '인도'는 소유나 관리를 자발적으로 물리적 또는 전자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UCITA, Sec. 102, (24)).

29) UCITA, Sec. 502, (a), 'official comment 2.'

다른 한편 저작권 양도시기는 약정상 저작권 양도를 정하고 있는 경우 약정서에 명시된 시간 및 장소에서, 달리 당해 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유형의 매체'(tangible medium)로 저작물을 인도할 경우 저작물의 제공과 관련하여- 허여권자가 그 의무를 완료한 시점과 장소에서 각각 이전하게 되며, 저작물의 '전자적 인도'(electronic delivery) 또한 이에 준한다.³⁰⁾ 반면에 계약상 권리가 이전된 당사자가 당해 저작물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또는 약정서의 조건을 거절하는 경우 당해 권리는 허여권자에게 귀속된다.³¹⁾

3. 계약상 권리양도³²⁾

1) 권리양도의 법적기준

일방의 '계약상 권리'(transfer of contractual interest)는 타방의 의무를 '중대하게 변경'(materially change)시키고, 타방에 부여된 의무나 위험을 중대하게 증가시키거나 타방의 자산 또는 거절이행의 가능성을 중대하게 손상시키는 경우 및 기타 실정법에 의하여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항상 양도가 가능하다.

한편 일방의 계약상 권리양도를 금지하는 조건은 이행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그러한 조건의 위반으로 이루어진 양도는 계약위반으로 간주된다. 다만 양도 받은 자의 계약상 권리를 비양도당사자(non-transferring party)³³⁾에게 생성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은데, 이럴때면 당해 계약이 허여된 정보 또는 정보를 포함한 정보권 또는 대중 배포 또는 대중 이행을 위하여 결합된 작업에서 다른 경로(source)에서의 정보권을 결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라이선스인 경우 및 당해 양도가 그것의 전체의무보다 적은 양도자의 정당한 이행으로부터 발생되는 급부에 대한 권리이고 또한 양도를 금지하는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각한다.

30) '전자적'이라고 함은 전기(electrical)·디지털(digital)·자기력(magnetic)·무선(wireless)·광학(optical)·전자자기력(electromagnetic)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가진 기술과 결부된 것을 총칭한다(UCITA, Sec. 102, (26)).

31) UCITA, Sec. 502, (b), 'official comment 3.'

32) UCITA, Sec. 503은 계약상 권리양도와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경우 권리양도 가능성과 양도를 금지 및 제한하는 합의의 효력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당해 규정격용에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 권리양도와 관련 UCC 제9편(secured transaction)이 적용될 수 있는데, 다만 동 규정과 UCC 제9편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후자가 우선하게 된다.

33) 실무적용상 유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UCITA에서는 당사자(party)와 당해자(person)를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우선 전자는 UCITA에 의하여 '거래를 약정하거나 계약하는 자'로 후자는 개인(individual), 법인(corporation), 기업신탁(business trust), 부동산(estate), 신탁(trust), 동업자(partnership),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협회(association), 합작투자(joint venture), '정부의 하부조직'(governmental subdivision), 대행기관 또는 대리점(instrumentality or agency), 공공기업(public corporation), 기타 법적 또는 상업적 실체로 정의하고 있다(UCITA, Sec. 102, (50)~(51)).

이 경우 유의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유효하지 않다(ineffective)'라고 하는 의미는 양수인과 양도에 관련이 없는 라이선스 거래의 당사자와의 법률관계에 있어 양도가 아무런 계약적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게 됨을 뜻하는데, 이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금지된 양도는 계약적 대가관계에 있어 상당한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당해 양도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양수인을 상대로 하는 라이선스 제공자의 권리침해 사유를 구성한다는 의미와는 명백히 구별하여야 한다.³⁴⁾

다른 한편 전체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권리나 의무 중 양도자의 정당한 이행으로 발생하는 급부에 대한 권리는 달리 정한 바 있는 약정 여하에 관계없이 양도될 수 있으나, 다만 피허용권자에 의하여 '일반시장 라이선스'(mass-market license)³⁵⁾에 의한 계약상 권리양도를 금한 조건은 명백하여야(conspicuous) 함을 그 제한요건으로 후보하고 있다.³⁶⁾

요컨대 동 규정은 계약에 따른 양도를 금지하는 거래조건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바, 즉 여 라이선스 하에서 이용범위(scope of use)를 다루는 거래조건이나 보증(warranty), 기타 의무가 누구에게로 확대되는지의 거래조건은 아님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4) U.C.I.T.A., Sec. 503., official comment 5.

35) '일반시장 라이선스'(mass-market license : 유통라이선스)라 함은 일반시장 거래에서 사용되는 표준형식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일반시장거래'(mass-market transaction)는 '소비자 계약(consumer contract)' 또는 최종 피허용권자와 기타 거래로서 당해 거래가 동일한 정보의 동일한 조건하에서 소비자 등 대중에게 권반적으로 목표된 정보나 정보권을 위한 것이고, 피허용권자가 소매시장에서 통상적 거래와 일치하는 조건과 수량으로 소매거래에서 정보와 정보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저작권 재분배, 공개이행 또는 공개 권지를 위한 계약, 피허용권자를 위하여 허용권자가 주문제작하거나 또는 달리 특별히 작성된 정보의 거래, 사이트 허여 또는 접속계약(access contract) 등에 해당되지 않는 거래를 말한다. 이 경우 접속계약(access contract)은 정보에 대한 접속 또는 타방의 정보처리시스템(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 PS)으로부터 정보에 대한 전자적 접속에 의해 또는 이와 유사한 접속에 의한 계약을 말한다. [PS는 정보를 작성(creating)· 생성(generating)· 송부(sending)· 수령(receiving)· 저장(storing)· 현시(displaying)· 처리(processing)를 위한 전자시스템을 말한다(U.C.I.T.A., Sec. 102, (1), (36))]. '접속계약'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바 U.C.I.T.A.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접속계약이 기한을 초과하는 접속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피허용권자의 접속권리는 그 기간 동안에 시의적으로 허용권자가 변경하고 상업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것이며, 정보 내용물에서의 변경은 당해 변경이 약정상 명시적 조건과 중들이 있는 경우에만 계약위반이 되며, 그것이 사용조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피허용권자가 입수한 정보는 제3자 또는 적용법의 정보권으로부터 발생한 제한 이외에 여타 용도의 제한으로부터 면제되고, 당해 접속은 입수가 가능하여야 하는데, 다만 약정상 명시적 조건에 일치하는 시간과 방법으로 그리고 약정서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정도만큼 당해 상거래의 통상적 규범에 비추어 특정 유형의 계약에 합리적인 시간과 방법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또한 합의된 기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선택하는 시간에 접속권리를 피허용권자에게 제공하는 접속계약에서 그러한 시기 동안에 시의적으로 접속을 입수할 수 없는 때는 그것이 특정 유형의 계약에 대한 당해 상거래의 통상적 관행과 일치하는 경우, 예정된 중단·유지를 위하여 합리적인 필요성, 장비·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통신의 합리적인 물리적 기간, 허용권자의 동의를 합리적으로 벗어난 사실에 의한 것으로 허용권자가 당해 상황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노력을 행사하는 바에 기인한 경우라면 계약위반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U.C.I.T.A., Sec. 611.)

36) U.C.I.T.A., Sec. 503, (d).

2) 권리양도에 관한 법률효과

일방의 계약상 권리양도에 있어 피허여권자는 모든 계약상 사용조건에 격용을 받게 되는데, 곧 언어나 상황이 다르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유가증권과 같은 양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양도는 양도자의 의무를 위임함을 전제로 권리가 양도되며, 양도의 승낙은 피양도자가 위임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약속으로 당해 약속은 양도자 및 당초 계약서의 어떠한 타방에 의해서도 이행가능 할 뿐만 아니라 양도는 양도자가 이행할 의무나 또는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경감하지 않으나, 다만 원 계약자의 타방이 양도가 그러한 취지를 갖고 있다고 동의한 경우에는 배제된다고 하는 원칙이 적용된다.³⁷⁾

계약의 유효한 양도는 채권양도의 경우 및 다른 여하의 합의나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의 인수로 간주됨에 따라 이에 양수인은 계약에 따른 양도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이행을 담보하게 되는데, 이는 곧 양수인은 당초 계약의 거래조건에 구속되어 계약당사자로서의 타방에 의하여 강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UCTA에서는 양도인과 당초 계약당사자 간 대가관계에 있어 현행 미국 내 여하의 실정법에 의한 양도가 행사되었더라도 당초 계약당사자에 대한 양도인의 의무는 계약당사자에 의한 경계(novation)³⁸⁾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는 한 변함이 없다고 규정하고, 나아가 단순한 양도는 경계를 구성하지 않으며 또한 당초 계약당사자 간 발생한 계약상 권리를 소멸하지 않는다고 명정하고 있음은 특별히 주목해야 할 규정이다.³⁹⁾

4. 대리인에 의한 이행과 재허여계약

대리인에 의한 이행이나 재허여에 관한 계약체결은 당초 계약당사자들이 제3자를 이용하여 당해 채무를 이행하기로 꾀약한 바를 그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재허여에 의하여 이행되는 경우 계약당사자는 당초 계약에 구속되며 응당 그 내용에 따른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이 귀속된다.

이 경우 계약이행을 재허여하기 위해서는 반대의 합의가 없어야 함이 전제되는데, 당해 반대의 합의는 직접적일 수도 있고 달리 간접적일 수도 있다. 곧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계약이행의 위탁을 금할 수도 있고 혹은 허여되는 정보의 이용자 또는 사용자들 지정 및/또는 제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행위를 금

37) UCTA, Sec. 504, (b).

38) '경계'란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동시에 신채무를 설립시키는 것으로, 이로부터 구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던 항변권 등을 가지고 채무자가 신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는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경계가 있게 되면 기존 당사자의 계약에 따른 의무는 소멸되게 된다.

39) UCTA, Sec. 504, (b)(4).

지할 수도 있다.

UCITA의 규정내용에 있어서는 우선 계약당사자 일방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거나 또는 대리인이나 재허여계약을 통하여 계약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계약상 위탁 또는 재허여계약을 금하고 있는 경우, 타방이 원 약속자로 하여금 이행하게 하거나 또는 그 이행을 통제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이해를 담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배제된다고 하고, 다만 위임 또는 재허여에 대한 행위는 위임하는 자로부터 이행의무 또는 위반에 대한 책임을 경감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⁴⁰⁾

5. 피허여권자에 의한 양도

피허여권자에 의한 양도와 관련하여 라이선스 이용자로서 양수인은 당해 라이선스와 UCITA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권리만을 취득할 수 있음에 따라, 금융의 목적으로 권리를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여 계약적 권리를 매입하는 자와 판결의 집행 등 비자발적으로 양수하는 자에게 적용된다.⁴¹⁾

마찬가지로 저작권이나 특허권의 경우에도 양도인은 그가 양도할 수 있는 권리 이상을 양수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까닭에, 저작권이나 특허권은 통상적으로 매수인을 보호한다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특허권자나 저작권자에게 수권된 범위를 넘어서는 양도는 양수인에게 사용·수익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게 할뿐만 아니라 이 같은 양도는 특허권이나 저작권의 침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고 할 것이다.

UCITA에서는 당해 라이선스에서 피허여권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발적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되는 경우에 피양도자는 정보, 저작물 또는 피허여권자의 계약상 또는 정보상의 권리를 향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⁴²⁾ 이는 피허여권자에 의한 양도로부터 폭여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명시적 보증규정으로 기능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IV. 금융라이선스와 금융제공에 대한 제한요건

1. 금융업자가 피허여권자가 아닌 경우 금융제공

40) UCITA, Sec. 505.

41) UCITA, Sec. 506, 'official comment 2.'

42) 제한규정으로 UCITA, Sec. 503, 또는 508, (a)(1)(B).

금융업자(financier)⁴³⁾가 금융융자계약(financial accommodation contract)⁴⁴⁾과 관련하여 피허여권자가 아니라면 금융업자는 라이선스의 이익 또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나, 다만 정보(권)에 대한 피허여권자의 권리 및 의무에는 당해 라이선스에 그리고 관련법에 의한 허여권자의 여타 권리 및 금융업자와 피허여권자 간의 여타 금융융자계약은 허여된 정보나 정보권을 사용하기 위한 피허여권자의 권리에 추가적인 조건이 부가될 수 있다고 하는 원칙이 적용된다.⁴⁵⁾

2. 금융라이선스

금융업자가 금융융자계약과 관련하여 피허여권자이고 당해 라이선스 또는 재허여된 라이선스에 의거하여 허여된 컴퓨터 정보(권)이 금융융자를 받는 피허여권자에게 양도하는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 다음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유효성이 부정된다.

곧 금융융자를 받은 피허여권자에게 양도 또는 재허여의 사실이 계약상 권리양도를 규정하고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⁴⁶⁾ 그리고 허여권자가 금융업자에게 당해 정보를 인도하기 전에 또는 라이선스를 허여하기 전에 융자받은 피허여권자의 신상명세를 알리고 또한 당해 라이선스가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기 위하여 또는 허여된 정보나 정보권을 융자받은 피허여권자에게 재허여하기 위하여 입수되어졌음을 분명히 나타내는 기록물에 의한 통지를 허여권자가 금융업자로부터 받았고, 금융업자가 금융융자를 하기 위하여서만 피허여권자가 되었으며, 융자받은 피허여권자가 라이선스의 조건을 채택하고 그 조건이 당해 라이선스와 관련법에 의한 허여권자의 여타 권리와 불일치하

43) '금융업자라 함은 금융융자계약에 의하여 피허여권자에게 금융융자를 제공하고, 금융융자가 제공되어지는 당사자에게 라이선스를 양도할 목적으로 또는 다시 라이선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피허여권자가 되거나 또는 금융융자계약 위반 시 라이선스에 의하여 정보 또는 정보권을 피허여권자가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하여 금융융자계약에 의거하여 계약상 권리를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 이 용어에는 라이선스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선택, 생성 또는 공급하고, 당해 정보에서 그 정보권을 소유하거나 그 정보의 수정 또는 유지를 위하여 자원을 제공하는 자는 포함하지 않는다[UCITA, Sec. 103, (31)].

44) '금융융자계약은 특정인이 피허여권자에게 금융융자를 제공하고 달리 규정한 바 있는 보증금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UCITA, Sec. 103, (29)]. 한편 금융서비스거래(financial services transaction)는 예탁금(deposit) · 대부금(loan) · 자금(funds) 또는 전자적 형태로 나타나고 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저장되거나 저장될 수 있고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검색되고 양도될 수 있는 금전가치나 특정인에게 또는 특정인으로부터의 지출금에 대한 기타 권리, 증서(instrument) 또는 기타 물품, 지출주문서(payment order) · 신용카드거래 · 직불카드거래 · 자금이체(funds transfer) · 자동정산소 이체(automated clearing house transfer) 이와 유사한 도 · 소매 자금이체, 신용장(letter of credit) ·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 · 투자자산(financial asset) · 신탁(investment property) 또는 대행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이와 유사한 자산, 확인(identifying) · 검증(verifying) · 접속가능(access-enabling) · 인가(authorizing) · 감독(supervising)하는 정보 등에 대하여 이들 이용(usage) · 이체(transfer) · 청산(clearance), 해결(settlement) 또는 처리(processing)에 요하는 거래를 규정한 약정을 말한다[UCITA, Sec. 103, (30)].

45) UCITA, Sec. 507.

46) UCITA, Sec. 503.

지 않은 정도만큼 금융용자계약에 의해 보증되는 경우[유효성인정사유] 등이다.⁴⁷⁾

또한 금융업자가 용자받은 피허여권자에게 라이선스에 있는 계약상 권리들 유효하게 양도하거나 또는 허여된 정보나 정보권의 재허여를 유효하게 행사하는 경우 용자들 받은 피허여권자의 권리와 의무는 당해 라이선스에 그리고 관련법에 의한 허여권자의 여타 권리 및 이상의 요건에 불일치하지 않는 정도만큼 허여된 정보나 정보권을 이용하기 위한 피허여권자의 권리에 추가조건을 부가할 수 있는 금융용자계약 등에 의하여 적용을 받게 된다.⁴⁸⁾

3. 금융제공

1) 취소불능의무

용자들 받은 피허여권자가 소비자(consumer)⁴⁹⁾가 아니라면 용자들 받은 피허여권자의 금융업자에 대한 의무는 취소불능(irrevocable)이며, 또한 독립되어 있다고 규정한 금융용자계약의 조건은 이행가능하다. 다만 의무는 취소불능이며 피허여권자의 당해 라이선스의 승낙 또는 금융업자의 가격제공 중 어느 것이 우선하든 당해 제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⁵⁰⁾

2) 구제조치 또는 이행

용자들 받은 피허여권자가 금융용자계약에 있어 중대한 위반을 하게 된 경우 금융업자는 당해 금융용자계약을 취소(cancel)⁵¹⁾할 수 있으며, 이에 상당한 구제조치를 행사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업자가 피허여권자가 되고 유효한 양도나 또는 재허여를 한 경우 피해

47) UCTA, Sec. 50B, (a).

48) UCTA, Sec. 50B, (b).

49) UCTA에서 특정하고 있는 소비자(consumer)는 개인이 계약시점에서 주로 개인적, 가족 및 가사상의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었던 정보나 정보권리를 허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 용어는 주로 농업, 사업운영, 개인적 이거나 가족적인 투자관리 이외의 관리 등 권문적, 상업적 목적으로 권리를 허여받은 개인은 포함하지 않는다[UCTA, Sec. 102, (15)]. 이에 반하여 상인(merchant)은 다음을 포함한다. 거래에 관련된 종류의 정보나 정보권을 다루는 자, 직업상 거래에 관여되는 사업관행이나 정보에 관한 당해 분야에 독특한 지식이나 기술을 보유한 자, 당해 거래에 관련된 관행이나 정보에 특이한 기술이나 지식이 직업상 그러한 기술이나 지식을 가진 대리인(agent), 중개인(broker) 또는 기타 중간자(intermediary)의 고용에 기여되는 자 등이다 [UCTA, Sec. 102, (46)].

50) UCTA, Sec. 50B.

51) 영미법에서는 용어의 사용에 있어 '(계약위반에 기한) 취소[해제]'를 'cancellation'으로 여타 '(계약의) 종료[소멸]'를 'termination'으로 구분하여 표현하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여권대 UCC, § 2-106 : "Termination occurs when either party pursuant to a power created by agreement or law puts an end to the contract otherwise than for its breach. On termination all obligation which are still executory on both sides are discharged but right based on prior breach or performance survives."].

당사자(aggrieved party)의 권리를 포함한 위반에 대한 허여권자의 구제조치 또한 보장된다. 달리 금융업자가 피허여권자가 되지 않았거나 또는 유효한 양도를 하지 않았다면 피허여권자가 당해 정보를 추가로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하여 금융융자계약서에 있는 계약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금융업자는 저작물을 점유하거나 당해 정보(권)를 이용하거나 또는 라이선스에 있는 계약상 권리를 양도할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융자를 받은 피허여권자가 금융융자계약의 중대한 위반 시 금융업자에게 저작물의 점유를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금융업자는 계약상 권리양도에 관한 일반규정⁵²⁾에 따라 약정상 허가된 경우에만 하여 당해 계약서의 권리를 이행할 수 있다.⁵³⁾

그러나 금융업자의 구제조치에 흔히 적용되는 제한사항으로 당해 구제조치는 허여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또는 그렇게 하는 것이 허여권자 의무의 '중대한 역변화(material adverse change)'를 초래하지 않거나, 허여권자에 부여된 의무나 위험을 중대하게 증가시키지 않거나, 허여권자의 기밀 또는 비밀자료를 공개하거나 또는 공개를 위협하지 않거나, 허여권자의 반권이행을 취할 가능성이 있거나, 당해 계약으로부터 기대하고 있는 바를 중대하게 손상시키지 않는 경우에만 그 행사가 보장된다.

아울러 금융업자는 허여권자의 동의없이 당해 정보 또는 저작물에 대한 통제를 달리 행사할 수 없고, 접속할 수 없으며, 판매·양도 또는 달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당해 금융업자 또는 피양도자가 라이선스의 조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배제의 사유가 조각된다.

3) 허여권자의 권리에 대한 효과

금융업자의 이익창출은 허여권자에 대한 여타의 의무를 부가하지 않거나 또는 허여권자의 권리를 변경하지 않으며, 금융업자의 이익은 당해 허여권자가 명백히 라이선스에 있어서 또는 다른 기록물에 첨부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허여권자의 여타 지적재산권에 귀속되지 않는다.⁵⁴⁾

52) UCTA, Sec. 503.

53) UCTA, Sec. 510, (a).

54) UCTA, Sec. 511.

V. 요약 및 결론

1. UCITA의 의의 및 입법성과

① UCITA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곧 컴퓨터 정보를 계약의 목적으로 취한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하여 적용되는 계약법으로서 컴퓨터 정보가 내재하고 있는 충분한 잠재력과 그 실현을 보장함과 동시에 컴퓨터 정보에 적용되는 법리를 명확히 하고, 나아가 상관습 또는 계약당사자 간의 약정을 기초로 컴퓨터 정보거래에 있어 상관습을 확대하고자 하는 바에 제정목적을 두고 있다.

② 컴퓨터 정보거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허여권을 포함하고 있는 까닭에, 당해 거래에 의하여 이전되고 획득되는 가치가 유형의 매체체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정보나 권리라는 것과 정보에 대한 거래가 조건적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 컴퓨터 정보거래에 있어 계약상 법리적 문제점은 계약형태가 라이선스의 허여라고 하는데 있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 라이선스는 허여권자가 자신의 임의처분 하에 둔 정보를 다른 피허여권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따라서 라이선스는 정보가 내재된 유형의 매체체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것과 관계없이, 다만 정보에 대한 권리의전을 통해서 정보의 이용에 대한 조건과 제한을 규율하는 계약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③ 당사적 대가관계에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곧 컴퓨터 정보가 계약의 목적으로 특정된 경우 유형물증을 기저로 계약책임에 관한 법리를 구성하고 있는 실정의 계약법규범을 적용함에 있어, 나아가 계약내용에 편입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컴퓨터 정보에 관한 실정의 적용법 지정에 있어 문제점 및/또는 장애를 수반하게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인데, 이에 대응하여 UCITA는 유형물증을 기저로 계약법리를 구성하고 있는 실정의 계약법규범을 적용함에 있어 예견가능한 법적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법적 실익과, 아울러 컴퓨터 정보를 계약의 목적으로 취한 경우 당해 계약의 적용법으로 UCITA를 지정하여 법적 안정성 및 합목적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계약당사자의 이해, 곧 상무적 실익을 내재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그 입법성과를 구할 수 있다.

2. 컴퓨터 정보의 권리양도에 대한 법적 기준과 효과

① 본 고에서는 이상과 같은 UCITA의 입법성과를 증시하여 컴퓨터 정보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하에서 정보권의 양도에 관한 법적 기준과 그 효과를 구하였다. 그 내용은 UCITA 제5편이 분석도구가 되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UCITA 제5편에서는 소유권과 계약상 권리의 양도에 관하여 다루고 있는데, 일괄하면 라이선스

계약하에서 정보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귀속을 명확히 하고 나아가 권리의 양도가 능성을 규정하고 있는 바를 그 핵심으로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담보의 방편으로 권리를 양도할 수 있는, 곧 담보부 라이선스 거래가 가능하도록 규정체계 내에 수용하고 있다. 나아가 금융라이선스와 금융제공에 대한 제한요건을 부가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순차적으로 금융업자가 피허여권자가 아닌 경우 금융제공의 법적 기준과 요건, 금융라이선스에 관한 제한요건 및 금융제공에 관련 취소능의무와 이에 상당한 구제조치 또는 이행규정 그리고 허여권자 권리에 대한 효과를 명확히 하고 있다.

③ 논제와 관련 UCITA에서는 정보권과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각각 별개로 구분하고, 이에 저작물은 정보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매체로서 기능할 뿐이라고 명시하고 이를 정보권 양도의 핵심적 빌리도 수용하고 있다. 정보권의 소유권과 저작권에 관하여 UCITA는 약정상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의 소유권 이전을 계약내용으로 특정한 경우 그 이전시기와 장소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은 라이선스에 의하여 적용받게 되고, 이에 상당한 권리에 대한 유보는 허여권자에 의하여 피허여권자에게 인도된 저작물에 한정된다. 이 경우 저작권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에 대한 이전시기에 준하며, 특별히 저작물의 전자적 인도 또한 동일하다.

④ 계약상 권리는 타방의 의무를 중대하게 변경시키고, 마찬가지로 당해 의무나 위험을 중대하게 증가시키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항상 양도가 가능하다. 일방의 계약상 권리양도를 금지하는 조건은 항상 이행가능한데, 이에 당해 조건의 위반으로 이루어진 양도는 일부 제한요건을 결부하여 등당 계약위반으로 간주된다. 한편 피허여권자에 의하여 일반시장 라이선스에 의한 계약상 권리양도를 금한 조건은 명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계약상 권리양도에 있어 피허여권자는 모든 계약상 사용조건에 적용을 받게 되며, 한편으로 계약의 유효한 양도는 달리 명정한 경우가 아닌 한 채무의 인수로 간주된다. 결국 양수인은 계약에 따른 양도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이행을 담보하게 되고, 이에 양수인은 당초 계약의 거래조건에 구속되어 계약당사자로서의 타방에 의하여 강제된다. 아울러 당초 계약당사자에 대한 양도인의 의무는 계약당사자에 의한 경계의 동이가 전제되지 않는 한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양도는 경계를 구성하지 않으며 또한 당초 계약당사자 간 발생한 계약상 권리를 소멸하지 않는다고 명정하고 있다.

⑤ 대리인에 의한 이행 및 재허여에 관한 계약은 당사자 간 제3자를 이용하기로 확약한 바에 따라 구속받게 되는데, 곧 재허여에 의한 경우 당사자는 당초 계약내용에 비추어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이 귀속된다. 다만 계약이행의 재허여는 반대의 합의가 없어야 한다. 한편 피허여권자에 의한 양도에 있어 양수인은 당해 라이선스와 동 법

에서 허용하는 권리만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는 금융제공의 목적으로 권리를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여 계약적 권리를 매입하는 자와 판결의 집행 등 비자발적으로 양수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다른 한편 당해 라이선스에서 피허여권자의 권리가 여하히 양도되는 경우 피양도자는 정보, 저작물 또는 피허여권자의 계약상 또는 정보상 권리를 향유하지 못한다.

3. 금융라이선스와 금융제공에 대한 제한요건

① 금융융자계약과 관련 금융업자가 피허여권자가 아닌 경우 금융업자는 라이선스의 이익 또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나, 피허여권자의 권리 및 의무에는 관련 계약내용 및 실정법에 의거하여 추가적인 조건이 부가될 수 있다. 또한 금융업자가 컴퓨터 정보나 정보권을 금융융자를 받는 피허여권자에게 양도하는 조건의 만족을 전제로 재허여의 사실이 계약상 권리양도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허여권자가 금융업자에게 정보 인도 및 라이선스 허여 전에 손상명세를 포함한 통지를 금융업자로부터 수신한 경우, 금융업자가 금융융자에 한하여 피허여권자로 구속되고, 융자받은 피허여권자가 채택한 라이선스 조건이 관련 실정법에 물일치하지 않은 정도로 금융융자계약에 의하여 보증되는 경우 그 유효성이 인정된다.

② 금융제공에 있어 취소물능의무에 관하여 피허여권자가 소비자가 아니라면 융자를 받은 피허여권자의 금융업자에 대한 의무는 취소물능임과 동시에 독립되어 있다고 규정한 금융융자계약의 조건은 이행가능하다. 다만 의무는 취소물능이며 피허여권자의 당해 라이선스의 승낙 또는 금융업자의 가격제공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 당해 제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 존재된다.

③ 한편 구제조치 또는 이행에 대하여 융자받은 피허여권자가 중대한 위반이 개입된 경우 금융업자는 당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아울러 상당한 구제조치를 행사할 수 있다. 이에 금융업자가 구제조치를 행사함에 있어 제한사항은 허여권자가 동의가 존재되고, 또는 동의가 허여권자 의무의 중대한 역변화 사유를 구성하지 않으며, 허여권자에 부여된 의무나 위험을 중대하게 증가시키지 않고, 허여권자의 기밀 또는 비밀자료가 유지되고, 허여권자의 반권이행을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고, 당해 계약으로부터 기대이익을 중대하게 손상시키지 않음을 요건으로 그 행사가 보장된다.

④ 허여권자의 권리에 대한 효과는 금융업자의 이익창출이 이에 상당한 허여권자의 의무를 여하히 부가하지 않고 그 권리를 유지하며, 금융업자의 이익이 허여권자가 라이선스에 또는 다른 기록물에 첨부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허여권자의 여타 지적재산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시사점 : 우리입법에의 함의

우리나라는 컴퓨터 정보거래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 간 권리·의무관계, 계약위반에 기한 구제수단, 정보 및 정보권의 양도에 관한 법적 기준,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증체계, 계약의 성립과 이행에 관한 명시적 기준 등을 실정법 체계 내에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라이선스 계약하에서 정보권 및 저작물에 대한 제반 권리의 귀속효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UCITA는 현재까지 컴퓨터 정보거래에 관한 한 구체적이고도 진일보한 계약법 원칙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당해 분야에 있어 국내 모방입법의 표본으로서 그 시사성을 제고하고 있다. 따라서 UCITA의 법리해석 및 규정체계 그리고 그 실무적용상의 족과 범위를 지속적으로 체계화하는 것은 시의적으로 자못 긴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살피기에 UCITA는 현재까지 컴퓨터 정보거래에 관한 한 구체적이고도 진일보한 계약법원칙의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관련 모방입법의 표본으로서 그 시사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UCITA에 대한 법리해석 및 규정체계를 바로 분별하여 그 실무적용상 족과 범위를 지속적으로 체계화하는 것은 글로벌 네트워크 환경 하에서 컴퓨터 정보를 계약의 대상으로 국내·외 거래관계에 임하고자 하는 계약당사자 간 실제적 이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실익담보의 차원에서 자못 긴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판단된다.

차제에 이상과 같은 본 고의 결과가 향후 UCITA를 결부하여 심도 있는 법리적·상무적 연구결과를 도출함에 있어, 나아가 상무적 유의점 도출을 위한 후속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에 있어 참고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권재열, "미국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UCITA)의 적용범위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 심종석, "국제상사계약에 있어 신의칙의 적용기준과 법적 규제에 관한 비교 연구", 「통상법률」, 동권 제56호, 법무부, 2004.
- _____, "미국 통일전자거래법상 컴퓨터 정보의 보증체계에 관한 고찰", 「e-비즈니스연구」, 제7권 제5호, 국제e-비즈니스학회, 2006, 11, 30.
- _____, "유럽계약법원칙하에서 물이행과 법적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통상법률」, 동권 제62호, 법무부, 2005, 04.

- 안병수 외, "컴퓨터 정보거래에 있어 계약의 이행과 그 조건에 관한 비교 연구", 「무역학회지」, 한국무역학회, 2006, 11, 30.
- 오병철, "UCITA상의 전자정보거래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 「무역상무연구」, 제2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6.
- 오현석, "컴퓨터 정보거래에 있어 계약위반에 기한 법적 구제에 관한 고찰", 「통상법률」, 통권 제70호, 법무부, 2006.
- _____, 외, "컴퓨터 정보거래에 있어 계약의 성립과 그 조건에 관한 비교 연구", 「경영법률」, 제16권 제3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06, 10.
- 이종열, "UCITA의 주요 논점과 대미 컴퓨터정보거래에서의 대응", 「국제상학」, 제18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2003.
- 한병완, "미국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UCITA)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제14권 2호,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2.
- _____, 외, "컴퓨터 정보거래에 있어 계약위반에 관한 고찰", 「e-비즈니스연구」, 제7권 제3호, 국제e-비즈니스학회, 2006, 09.
- 허해관, "국제전자정보거래에 관한 입법동향", 「무역상무연구」, 제2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4.
- 國生一彦, 「米國の電子情報取引法 - UCITA法の解説 -」, 商事法務研究會, 2001.
- Farnsworth, E. A., *Farnsworth on Contracts*, 2nd ed., Aspen Publishers, 1998.
- Gregory, V. L., "Problems Presented by the New State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 Act(UCITA) Respecting the Use of Electronic Resources," *ACRL 10th National Conference*, 2001.
-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NCCUSL),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 Act ; Last Revisions or Amendments Completed Year 2002*, 2002.
- NCCUSL, *UCITA with Prefatory Note and Comments*, 2002.
- Schaber, A. D., · Hohwer, C. D., *Contract*, 3th, West wadsworth, 1999.
- Steven H. Giffo, *Law Dictionary*, 4th ed, Barron's Educational Series, 1996.
- Digital Signature Bill(1997)
- Electronic Signatures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E-Sign)
- OECD Guidelines for Cryptography Policy(1997)
- UCITA Restatement (2nd) of Torts §552.
-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 Act(UCITA)
-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UETA)